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등기번호	033790
등록번호	135811-0337907
상 호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공고방법	일간신문 한국경제에 게재한다.
------	------------------

1주의 금액	금 10,000 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 주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5,190,000 주	금 51,900,000,000 원	2019.02.09 변경
기명식보통주식	1,030,000 주		2019.02.11 등기
기명식예이종종류주식	4,160,000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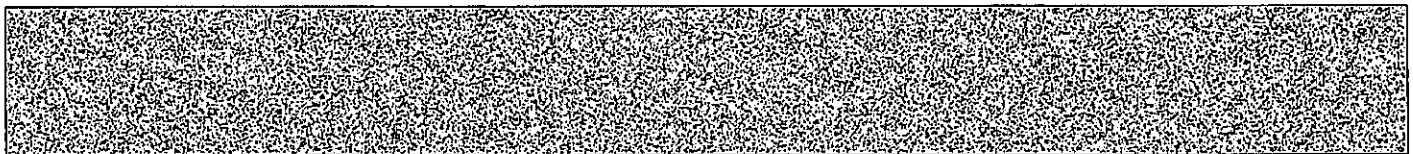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 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 주택건설사업
- 부동산의 개발사업
- 부동산의 임대차
- 증권의 매매
- 금융기관에의 예치
-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
-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관리, 처분

임원에 관한 사항	
감사 김수현 720530-***** 2021년 03월 26일 중임	2021년 04월 02일 등기
사내이사 김두철 640225-***** 2021년 07월 30일 취임	2021년 08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김두철 640225-*****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4040400450101001011011200029170343G0N1A1M8E5E3H1 1 발급확인번호 7902-AAVN-VYJP 발행일: 2021/10/01

등기번호	033790
2021년 07월 30일 취임	2021년 08월 06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심태용 780817-*****	
2021년 07월 30일 취임	2021년 08월 06일 등기
사내이사 김태근 750114-*****	
2021년 09월 15일 취임	2021년 09월 17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태근 750114-*****	
2021년 09월 15일 취임	2021년 09월 29일 등기
2021년 09월 29일 경정	

종류주식의 내용
기명식에이종종류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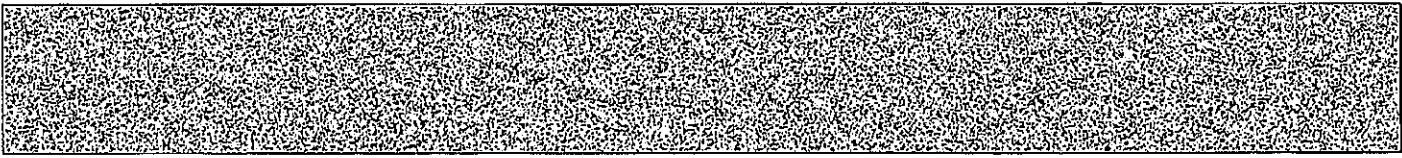
① 회사는 삼천이백육만(32,06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에이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②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먼저 에이종 종류주식에 그 발행가액의 연 4.78%의 비율로(이하 “우선배당률”이라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 수에 따라 균등 배당한다.

③ 어느 사업연도의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되,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러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다 이루어진 후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 수에 따라 균등 배당한다.

④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시설(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일부 매각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당한다.

1.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배당과 제3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진행한다. 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항 제2호 중 에이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에이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
2.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본 항 제1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에이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에이종 종류주주가 납부한 주식인수대금의 현재가치가 배당 등으로 회수되는 모든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의미함) 연 4.78%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명확히 하기 위하여, 에이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에이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단,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제2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을 공제함)을 배당한다.
3.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이 기준매각가격(아래에서 정의됨) 이상 상승한 경우, 대상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대상부동산 매각가격에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대상부동산 취득가격과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과 기준매각가격의 차액의 50%에 에이종 종류주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이하 “초과처분이익”이라 함) 중 10%를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단, 본 호는 대상부동산의 전부 매각이 완료된 결산기에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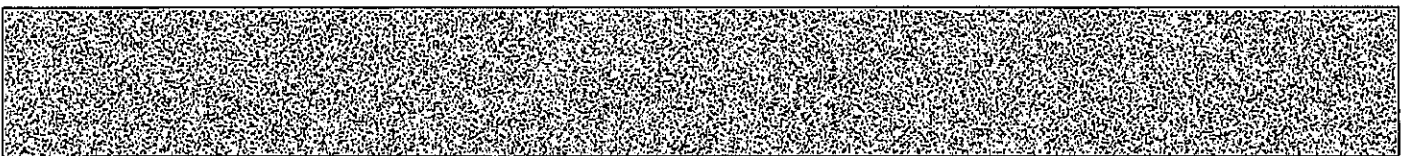
등기번호	033790
<p>※ 기준매각가격 = (공동주택의 시세) × (1 + r1)n/365 + (근린생활시설의 시세) × (1 + r2)n /365</p> <p>-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시세: 2018년 11월 23일자 기금투자심의회에서 회사의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사업완충률을 산정하기 위해 승인한 각 시세.</p> <p>- : 공동주택의 연간 가격 상승률로 1.5%로 한다.</p> <p>- : 근린생활시설의 연간 가격 상승률로 0.0%로 한다.</p> <p>- n: 기금 최초출자일로부터 대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체결일까지의 총 일수</p> <p>4. 제3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주식 수에 따라 균등 배당한다.</p> <p>⑤ 회사 청산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p> <p>1. 본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액 상당액을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다만, 본 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미 배당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본 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p> <p>2. 본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초과처분이익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액 상당액을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p> <p>3. 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주식 수에 따라 균등 분배한다</p> <p>2021년 09월 15일 변경 2021년 09월 17일 등기</p>	

기 타 사 항	
1. 주식의 양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18년 03월 26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8년 03월 26일 등기
-------------------------	------------------

-- 이 하 여 백 --



등기번호	033790
------	--------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1년 10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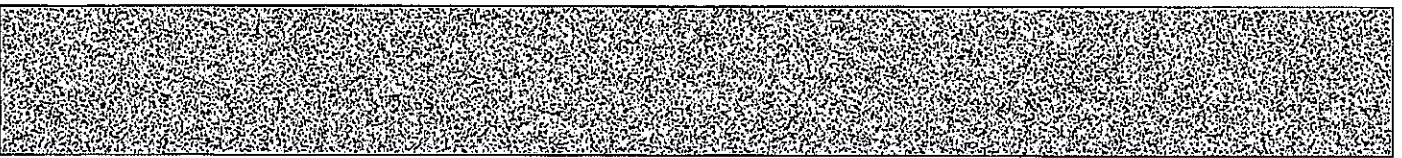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4040400450101001011011200029170343GON1A1M8E5E3H1 1 발급확인번호 7902-AAVN-VYJP 발행일:2021/10/01